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 가.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동 (신청접수 및 조사)과 구(결정)에서 분담 처리하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업무의 신속·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 나.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3. 주요골자

가. 용자금 대부신청

- 1) 종전 : 동장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
- 2) 개정 : 구청장에게 제출(동장 추천 폐지) (안 제3조 및 제6조)

나. 용어정비

- 1)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 제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건은

○ 2004. 7. 1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절차등을 주민편의도모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적의 조정 함으로써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
히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점을 감안한다면